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공고 안내문]

2020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3> 교육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성평등활동, 여성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임/단체 구성원들의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 공모개요

- 사업수행기간 : 5월~8월
- 공모기간 : 2020년 2월 26일(수)~3월 27일(금) 18:00까지
- 공모대상 : 성평등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자 하는 성평등활동가 모임 및 단체
(단, 서울시 소재)
- 공모내용 : 지금, 우리 동네에 필요한 여성주의 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실행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 단체 당 최대 300만원 상당 지원
- 예산항목 : 강사비, 공모사업 담당자 지정 1인 인건비(사업실행 이후 중도 변경 불가)
* 예산항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2 참조
- 지원조건 : 서울시 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성평등활동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단체

□ 지원방법

- 접수방법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genderequity.kr)에 접속하여
공모사업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접수 후 우편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신청서류 포함) 5부
- 접수기간 : 2020년 2월 26일(수)~3월 27일(금) 18:00까지(우편 소인일 기준 마감, 접수기간 이후 접수분 인정 안 됨)
- 접수처
· 이메일접수 : seoulgenderequity@gmail.com
- ※ 접수 시, 제목에 “[젠더스쿨] 지원(모임/단체명)”, 본문내용에 “모임/단체명, 담당자 성명(활동명), 연락처”를 입력 후 발송
- 우편접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15동) 6층(03371)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우리동네 젠더스쿨 사업 담당자 앞
- ※ 접수 시, 제출서류 인쇄본 5부 등기우편 발송(방문접수, 택배, 퀵서비스 제외)

□ 심사·선정 및 결과발표

1) 선정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비율
사전 준비 정도	▶신청 주체의 활동(사업)수행 역량	20
사업 효율성 및 타당성	▶활동(사업) 계획 및 운영성과의 내용 적합성	20
지속가능성	▶활동(사업)의 지속가능성	20
발전가능성	▶활동(사업)의 자치구 내 확산 가능성 정도 ▶활동(사업)의 효과성	30
예산타당성	▶예산편성 계획, 사용의 타당성	10

※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선정심사 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음

2) 선정방법

○ 사전 요건 심사: 사전 서류 심사 후 내용 심사 대상 선정

※ 부적합시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

○ 내용 심사 : 별도의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의거 서면심사

3) 선정발표

○ 시기 : 2020년 4월 3일(금) 11:00 예정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genderequity.kr) > 소식 > 공지사항

□ 사업 오리엔테이션

○ 시기 : 2020년 4월 10일(금) 14:00~17:00 예정

○ 내용 : 사업 실행 관련 교육 및 안내(회계 지침, 추후 보완서류 안내 및 질의응답 등)

□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선정 시 공모신청서 상의 지원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 지원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문의

- 사업팀 02)6258-1023 / seoulgenderequity@gmail.com(평일 10:00-18:00)

1. 강사비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

(1) 일반교육강사 지급기준

등 급	대 상 (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 별 1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 별 2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매시간)	
일 반 1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매시간)	
일 반 2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매시간)	
일 반 3 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매시간)	
보 조 강 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 어 강 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 도 기 준 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센터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한다.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한다.)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장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

다.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매달의 강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 교육 전체를 1건으로 보고 지급한다.

라. 강사료 집행 시 강사 프로필, 신분증, 통장사본, 강의확인서, 수령증을 구비한다.

3. 학술행사비

급수	등급기준	지급액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차관(급), 광역(기초)자치단체(의)장, 국회의원, 대학총장 (전·현직 포함) - 사회적 명망이 높은 학계·문화·예술·종교인 -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임원급 이상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발표자 500천원 사회자 300천원 토론자 250천원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광역(기초)시의원 - 대학강사(대학조교수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 - 시민단체 임원 - 기업체 및 단체, 사설교육기관의 부장급 이상 -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발표자 300천원 사회자 250천원 토론자 200천원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강사(대학전임강사 이하) - 기업체 및 단체, 사설교육기관 부장급 미만 	발표자 250천원 사회자 200천원 토론자 150천원

※ 원고료는 학술행사비에 포함된 금액임(별도 지급하지 않음)

[별첨 2]

1. 공모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급기준

- 대상: <우리동네 젠더스쿨> 공모사업 담당자 지정 1인
- 지원기간: 5월~8월
-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월 60만원 초과 지급 불가)
-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급기간	최소 2개월~최대 4개월
업무시간	주 12시간 이내
지급기준(주 당)	12,500원(1시간), 50,000원(4시간), 100,000원(8시간), 150,000원(12시간)
필수사항	업무일지 작성

- 추후 제출서류: 담당자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이력서, 업무일지
- 유의사항: 위 업무시간 및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책정할 것

기존 단체 4대보험 가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별도 협의 필요